

제3회 건설공사 거버넌스 회의

- 일시 : 2015.05.20.(금)
- 장소 : SH공사 14층 대회의실



진행순서

1. 개 회
2. 참석위원 소개
3. 위원장님 인사말씀
4. 회의순서 안내
5. 의견발표
6. 안건토의
7. 폐 회

세 부 일 정

시 간	내 용	발표자
15:15 ~ 16:30	주제 발표 1. 적정임금제 도입 관련 검토 사항 - 이하 현장 건의 등 의견 발표 2. 오금지구 1,2단지 건설공사 오금지구 1,2단지 골조공사 3. 신정4지구 건설공사 4. 마천 3단지 및 거여 12-1 건설공사 5. 천왕 8단지 및 고척동 건설공사 6. 오금지구 정보통신공사 7. 문정법무시설 정보통신공사 문정법무시설 기계공사 8. 문정법무시설 조경공사	항동 3단지 심재용 단장 항동 8단지 안현후 소장 문홍준 단장 오국찬 전무 이창하 차장 오호석 소장 정병권 단장 박성진 소장 백민길 소장 정찬구 소장 신교호 소장
16:30 ~ 16:40	휴식	
16:40 ~ 18:00	주제 발표에 대한 자유 토론회	
18:00 ~	석식 및 논의결과 총평	

적정임금 지급방안 검토 발표

적정임금 지급방안 검토

■ 의견 발표자 : 향동 3단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심재용 단장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p>현 실태 (헌법 제 32조 1항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의 임금 결정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re> graph LR A[발주처 (75%)] -- 낙찰률 --> B[원수급자 (82%이상)] B -- 낙찰률 --> C[하도급자 (일당)] C -- 낙찰률 --> D[근로자 (단위물량)] </pre> </div> • 건설현장 근로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수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소속된 고정 근로자가 극소수 : 대부분 현장인근 또는 타지에서 수요에 의해 공급 - 개인별 또는 5~15명 단위의 팀으로 구성되어 활동 : 하도급자와 팀의 대표자가 단가결정하고 작업량에 따라 임금 분배 - 연간 지속적,안정적 일감 확보 곤란 (계절적,기후적 영향을 많이 받음) : 안정적 수입확보 불가 - 현장내 불법 외국인근로자 과다 : 저가임금,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호 - 현장내 근로자의 고령화 : 40대이상 약 82%차지, 젊은층 건설현장 거의 전무 - 노임체불 과다 : 대금e 바로 시스템으로 체불 감소효과 기대 	

• 근로자 1일 지급단가 (타 현장)

구 분	직 종	1일 지급액(원)	'16 시중노임단가(원)	비 고
형틀목공	기공	160,000	160,4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노임단가보다 실 지급 단가가 약간 높음 -하도급자 시공물량으로 보완 -시중노임단가 적게 책정
	조공	130,000	105,790	
철근공	기공	175,000	154,424	
	조공	140,000	105,790	
조적공	기공	170,000	135,009	
	조공	140,000	105,790	
방수	기공	130,000	110,271	
	조공	100,000	105,790	
미장	기공	160,000	149,091	
	조공	120,000	105,790	
배관공	기공	150,000	125,901	
	조공	110,000	105,790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해 외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Prevailing Wage) : 1931년 시행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27 394 1279 459">주 요 내 용</th> <th data-bbox="1279 394 1749 459">제 재 사 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27 459 1279 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설 공사를 수주할 때 임금은 아예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개 주에서 시행 중 • 매 3년마다 적정임금 조사 •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노무비 지급으로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생활 여건 제공 - 임금 체불 억제 -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 적정공사비 확보(평균낙찰률 90%) •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분류 혼란, 편법 가능성 상존 - 행정절차 복잡 </td> <td data-bbox="1279 459 1749 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공공건설 입찰 금지 • 당해공사 계약 해지 가능 • 민·형사 소송과 벌금 또는 징역의 벌칙 </td> </tr> </tbody> </table>		주 요 내 용	제 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설 공사를 수주할 때 임금은 아예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개 주에서 시행 중 • 매 3년마다 적정임금 조사 •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노무비 지급으로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생활 여건 제공 - 임금 체불 억제 -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 적정공사비 확보(평균낙찰률 90%) •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분류 혼란, 편법 가능성 상존 - 행정절차 복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공공건설 입찰 금지 • 당해공사 계약 해지 가능 • 민·형사 소송과 벌금 또는 징역의 벌칙 	
	주 요 내 용		제 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설 공사를 수주할 때 임금은 아예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개 주에서 시행 중 • 매 3년마다 적정임금 조사 •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노무비 지급으로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생활 여건 제공 - 임금 체불 억제 -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 적정공사비 확보(평균낙찰률 90%) •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분류 혼란, 편법 가능성 상존 - 행정절차 복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공공건설 입찰 금지 • 당해공사 계약 해지 가능 • 민·형사 소송과 벌금 또는 징역의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Award System) : 1920년대 시행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27 1075 1279 1134">주 요 내 용</th> <th data-bbox="1279 1075 1749 1134">제 재 사 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27 1134 1279 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경쟁 방치시 노무비 과도하게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한 노무비삭감 방지위해 도입 • 직종별 임금의 최저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시된 임금 근로자에게 지급 • 적용범위 : 공공 + 민간현장의 모든 근로자 </td> <td data-bbox="1279 1134 1749 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6개월 공공공사 입찰 제한 </td> </tr> </tbody> </table>	주 요 내 용	제 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경쟁 방치시 노무비 과도하게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한 노무비삭감 방지위해 도입 • 직종별 임금의 최저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시된 임금 근로자에게 지급 • 적용범위 : 공공 + 민간현장의 모든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6개월 공공공사 입찰 제한 			
주 요 내 용	제 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경쟁 방치시 노무비 과도하게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한 노무비삭감 방지위해 도입 • 직종별 임금의 최저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시된 임금 근로자에게 지급 • 적용범위 : 공공 + 민간현장의 모든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6개월 공공공사 입찰 제한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도 입 방 안	구 분	장 점	단 점	
	월급 여제 시행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안정적 수입 가능 - 불안정한 수입은 가정 경제 불안과 경제적 활동 위축 초래 ·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안정적 일터 - 건전한 생활 패턴 제공 · 우수 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내국인 고용 확대 - 이직방지 및 젊은층 고용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업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감 확보 곤란 · 하도급업체의 건전한 재무구조 필요 (현장, 재택근무 구분) 	
	입찰 방법 보완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노임단가를 적정임금 기준으로 활용 · 입찰시 예정가격 단가상 노무비 고정, 재료비,경비로만 입찰 : 공사원가 상승요인 발생 · 입찰공고시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명시 : 현장설명서, 공사계약특수조건등 		
선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법률에 명문화 ·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 상향 조정 필요 · 기능공에 대한 숙련도, 기술등급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직종별,등급별 임금에 대한 조사 필요 · 기능공의 하도급자 소속으로 책임감 부여(고용 안정) : 성실시공 및 안전사고 감소, 부실 업체 정리, 외국인 불법근로자 정리 · 하도급자 공정관리 전문성 요구 : 필요인력 적기수급 및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 · 근로자 고용형태 변화 : 현재 공종별 팀단위 운용에서 개별로 필요한원 채용 			
종 합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의 건설현장 유입을 위하여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면 청년층의 고용창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건설 산업의 미래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 이를 위하여 미국의 PW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월급여 체계로 전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현장에서는 공사초기 단계로 임금체불 방지노력과 공종별 실질적인 지급임금이 얼마인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후 자료로 활용토록 감리업무를 강화할 계획임 			

적정임금제 적용 및 체불 노임방지 검토안

□ 의견 발표자 : 향동 8단지 현장대리인 안현후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p>적정임금제 검토배경 및 필요성</p>	<p>● 적정임금제 검토 배경 및 필요성</p> <p>□ 검토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의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정임금제 도입 검토 <p>□ 건설현장 현실</p> <p>※ 제살깎기 저가수주 경쟁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 주 자 → 수요독점 저가유도 원수급자 → 수주를 위한 제살깎기 하수급자 → 수주를 위한 제살깎기 근 로 자 → 고령화, 외국인증가 등으로 저임금구조 <p>※ 제도적 보완을 통한 적정가격 경쟁 입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 주 자 → 적정가격 발주, 고품질확보 (기술제안방식, 종합심사제) 원수급자 → 적정가격 계약, 적정관리 하수급자 → 적정가격 계약, 적정시공 근 로 자 → 적정임금확보, 내국인 일자리 확보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건설근로자 노임단가 비교	<p>● 공공발주시 적용되는 노임단가의 비교</p> <p>예) 철근가공조립공 단가비교(2015년)</p> <table border="1" data-bbox="450 403 1653 699"> <thead> <tr> <th>구 분</th> <th>표준시장단가 [SH공사 적용]</th> <th>표준품셈단가</th> <th>시중노임단가</th> </tr> </thead> <tbody> <tr> <td>철근가공조립(간단)</td> <td>287,890원</td> <td>488,466원</td> <td>148,057원</td> </tr> <tr> <td>철근가공조립(보통)</td> <td>319,994원</td> <td>550,029원</td> <td>190,000원</td> </tr> <tr> <td>철근가공조립(복잡)</td> <td>366,345원</td> <td>610,722원</td> <td>210,000원</td> </tr> </tbody> </table> <p>※ 상기표를 분석해보면</p> <p>① 3가지 노임단가중 발주기관에 따라 선택해 적용되는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표준품셈단가를 적용하여 발주할 경우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p> <p>② 또한, 건설공사 입찰시 직접노무비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가 100%를 적용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됨.</p>	구 분	표준시장단가 [SH공사 적용]	표준품셈단가	시중노임단가	철근가공조립(간단)	287,890원	488,466원	148,057원	철근가공조립(보통)	319,994원	550,029원	190,000원	철근가공조립(복잡)	366,345원	610,722원	210,000원	
구 분	표준시장단가 [SH공사 적용]	표준품셈단가	시중노임단가															
철근가공조립(간단)	287,890원	488,466원	148,057원															
철근가공조립(보통)	319,994원	550,029원	190,000원															
철근가공조립(복잡)	366,345원	610,722원	210,000원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건설근로자 각 직종별 단가비교	● 각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및 실지급단가 비교						
	직 종 명	시중노임단가 (15년 하반기)	실지급 단가 (16년 상반기)	시중노임 / 실지급 대비		비 고	
			금 액	비 율			
	보통인부	101,160원	130,000원	+28,840원	128.50%	조공	
	형틀목공사	152,831원	200,000원	+47,169원	130.86%	16년 5월 15,000원 인상	
	철근공	148,057원	190,000원	+41,943원	128.33%	16년 5월 10,000원 인상	
	조적공	126,631원	180,000원	+53,369원	142.15%		
	방수공	105,008원	140,000원	+34,992원	133.32%		
미장공	141,989원	200,000원	+58,011원	140.86%			
상기표를 검토해 보면							
① 건설근로자 일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시중노임단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시중노임단가 책정시 현실단가의 적극적인 적용이 요구되며							
② 건설현장 여건상 근로자 한달 평균 22일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저임금 구조가 형성되는게 현실임.							
③ 퇴직후 지급받는 퇴직공제부금 금액 상향 필요 (현재 1달 작업시 126,000원 적립)							
[퇴직공제부금 = (1일 4,200원 * 누적일수)]로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p>건설근로자의 안정된 고용 및 임금현실화 방안</p>	<p>● 건설근로자의 안정된 고용 방안</p> <p>※ 불법 외국인근로자 퇴출</p> <p>문 제 점 - 현재 외국인근로자 건설현장 취업수는 31만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8만명이 불법 외국인근로자로 파악이 됨 (약 58%)</p> <p>해결방안 -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경쟁으로 인해 내국인근로자의 임금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불법체류자라도 퇴출되면 내국인근로자의 임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음.</p> <p>※ 건설기능공 양성</p> <p>문 제 점 - 2000년대 초반 이후 국내건설 취업자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2003년 1,81만명 → 2014년 1,79만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관련 기능공 및 노동자의 고령화 [특히, 습식공사의 기능공의 고령화가 심함] <p>해결방안 - 형틀, 내장공 및 습식공사 기능공의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임 등 각종 대금 지급 관리 확인 철저 - 주5일 근로조건 강화 및 복지정책 강화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건설근로자 노임체불 방지대책	<p>● 건설근로자 노임체불 방지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SH공사의 대금e바로 및 타 발주처의 노무비 구분지급제도 등으로 노무비 지급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음. □ 근로자, 장비업자 및 자재업자의 대금e바로의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수급업체 및 감독자 일일체크) □ SH공사 모든 현장의 근로자 임금날짜를 매월 25일 등으로 정례화 □ 자재 및 장비 등의 경우 원수급업체에서 직접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체적으로 노임 민원발생은 하도급업체에서 체불이 많음. ② 각각의 하도급 계약시 이에 해당되는 자재 및 장비 등을 일괄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하도급업체의 사정상 대금지불이 늦어지거나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③ 공정별 주요 자재는 원도급사에서 계약 관리하는 것이 현장내 품질관리, 사후관리 및 체불노임도 줄일수 있음. ④ 일괄하도급 공정 중 전문성을 요하는 주요 공정과 기계공사의 경우 펌프류, 휠류, 열교환기 등 주요설비자재, 토목공사의 경우 H-빔, 토류판 등을 원수급사에서 직접 계약을 하면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할수 있는 노임 및 자재대금체불을 줄일수 있을 것 임. 	

현장 건의사항 등 의견 발표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1,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의견발표자 : 책임건설사업기술자 문홍준 단장

항 목	건의 내용	비 고										
폐기물 관련	<p>1. 폐기물처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연면적당 발생량기준 산정 (기동식구조 : 25.093Kg/m²) - 개선 : SH현장 실발생량 조사후 재산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발생량(기동식구조) : 42.371Kg/m² - 요청사유 : 폐기물처리비 과소 책정에 따른 건설사 부담금액 과중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20%;">신내3지구</th> <th style="width: 20%;">내곡3,5,7단지</th> <th style="width: 20%;">세곡6,8단지</th> <th style="width: 2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폐기물초과 부담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451백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10백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49백만원</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신내3지구	내곡3,5,7단지	세곡6,8단지	비 고	폐기물초과 부담금액	451백만원	510백만원	449백만원		
구 분	신내3지구	내곡3,5,7단지	세곡6,8단지	비 고								
폐기물초과 부담금액	451백만원	510백만원	449백만원									
설계개선 관련	<p>1. 세대 바닥재마감 변경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강화마루 → 개선 : 강마루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마루 하자발생에 따른 품질개선자재 적용 ▷ 미관향상, 하자저감 및 유지관리 성능향상 											
레미콘 수급 불안정	<p>1. 레미콘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공정지연 및 추가시공비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미콘 공급량 부족 및 “8/5제” 시행에 따른 골조공사 공정 지연 - 현재 2주후 예상 타설계획을 기준으로 레미콘 물량 배정 (조달청 및 발주처 참여하여 매주 수급회의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여건 등으로 작업 지연시 레미콘 재배정 지연 - 골조공사 하도급업체 추가투입 발생에 따른 자금난으로 민원 및 미불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 작업일수 부족 및 대기에 따른 민원 및 이탈 발생 ▷ 하도급업체 추가공사비 설계변경 요청공문 접수 후 협의중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골조공사

■ 의견발표자 : 골조공사 하도급대표 오국찬 전무

항 목	건의 내용	비 고
레미콘 납품지연 관련	<p>1. 공정지연으로 공기준수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초 : 착공 후 12개월 - 현 재 : 착공 후 15개월 (현재 약 3개월 지연) - 문제점 : 레미콘 수급 차질로 2단지 지하층 완료일 불투명 <p>☞ 공기준수를 위해서는 레미콘납품 정상화 및 돌관공사 필요</p>	
	<p>2. 인력수급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초 : 월 3~4회 타설 - 현 재 : 월 2회 타설도 불투명 - 문제점 : 작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및 작업자 이탈 발생 <p>☞ 레미콘 납품 정상화 지연시 작업자 이탈로 공사중단 예상</p>	
	<p>3. 추가투입비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타설비 : 장비비 + 인건비 할증비용 지급 - 2단지 끌어치기 증가(26회 → 63회)에 따른 자재 및 인건비 추가지급 - 2단지 지하층 자재 : 유로폼, 비계, 서포트 등 임대료 추가지급 - 작업자 이탈방지를 위한 작업대기료 지급 (3백만원/일) <p>☞ 설계변경 미반영시 자금여력 부족으로 공사수행 불가</p>	

마천지구 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및 거여동 12-1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 의견발표자 : 현장대리인 오호석 소장

항 목	건의 내용	비 고
공정관리 관련	(거여동 12-1) 1. 표토(두께 1.5m, 수량 6,900m ³)의 폐기물과 혼합 - 폐기물 선별작업으로 인한 공기 감안 필요	
설계변경 관련	(거여동 12-1) 1. 복공판 미설계 - 대 책 : 2개소 설치 필요 - 사 유 : 주변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복공판 2개소 미 설치 시 자재야적 및 콘크리트 타설 불가 2. 표토 폐기물 체가름량 수량산출 방법 변경 - 요구사항 : 체가름 후 발생된 폐기물 발생량으로 산정하는 기준상 문제 있어 폐기물 발생량이 아닌 체가름량으로 수량 산출 적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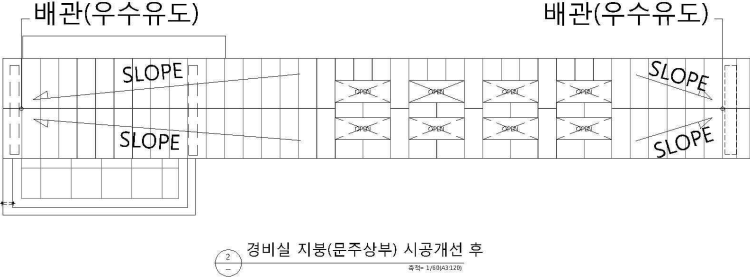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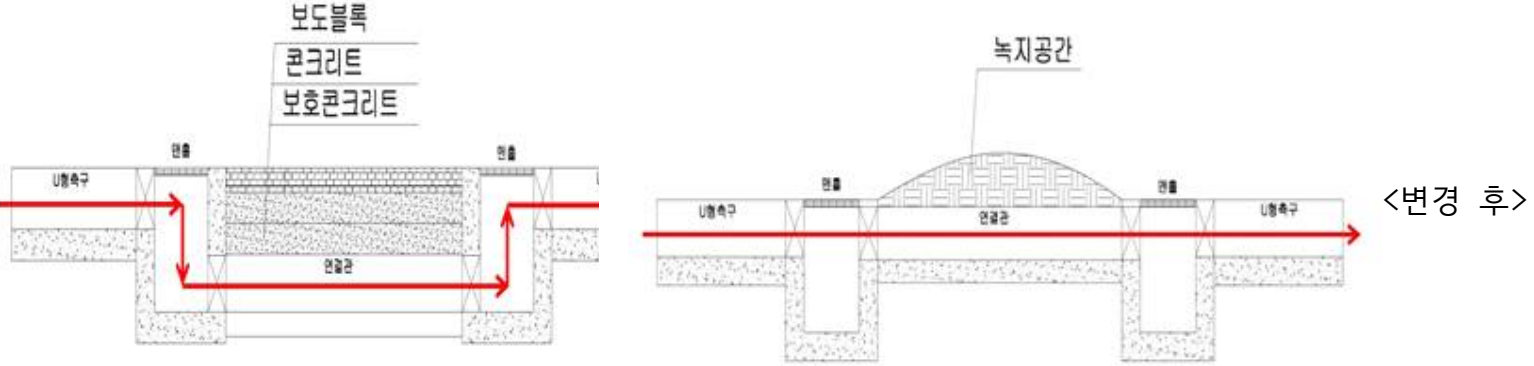
천왕8단지 및 고척동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 의견발표자 : 책임건설사업기술자 정병권 단장

항 목	건의 내용	비 고
시 공 사 작업준비 단계 이행사항	<p>1. 시공사의 계약서상 착수일 이후 약1개월 정도의 작업준비기간에 시공사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이 필요</p> <p>■ 작업준비기간 : 계약서상 착수일~사업승인기관에 착공계를 제출한 시점 또는 사업관리단 착수일</p> <p>■ 작업준비단계 이행사항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 작성/ 가설울타리 설치/ 가설건물/ 가설전기, 가설수도 등의 가설공사 완료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인선완료/시공사조직 구성 완료 -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 -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 토목하도급공사 계약 체결/하도급 시행계획 작성 - 사토장 선정승인/ 현장 시험터파기 / 토질시험 등 	
감리인월수 관련	<p>1. 소방 비상주(기술지원)감리원의 본격 투입시점의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인월수 산정 : 감리단 착수시점부터 주1회(혹은 주2회) 현장 투입 - 개선 : 소방착공계 제출후 주1회(혹은 주2회) 현장투입(소방착공계 제출 이전에는 월1회 투입) - 개선사유 : 소방착공계 제출이전 단계에서는 설계도서 검토 등 외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음 	
공통가설공사 관련	<p>1. 도심지 건물밀집지역 공사시 공통가설공사에 복공판 작업대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 건물밀집지역에서 건설공사시 현장내에 여유 부지가 없으므로 복공판 작업대가 필요함 - 복공판 작업사항 : 토공사 마무리, 레미콘 타설, 철근반입 양중, 거푸집반입 양중 등 - 복공판 유지기간 : 설치후~1층 바닥 콘크리트 양생 완료후 까지 	
주공정 사항에 대한 공정관리	<p>1. 주공정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골조공사 지연시 대책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공정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의사결정되도록 보완 필요 - 골조공사 지연시(SH 5단계 지상구조물 완료 미이행시) 수급사에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 필요 	

신정4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공사

■ 회의참석자 : 이창하 공사차장

항 목	건 의 내 용	비 고
	<p>1. 경비실 지붕(문주상부) 평레벨시 동절기 고드름 발생·추락으로 입주민 및 차량의 피해발생 예방을 위해 유도를 위한 구배, 배관 시공</p>  <p>경비실 지붕(문주상부) 시공개선 후 주방-1(0903120)</p>	
시공개선	<p>2. U형측구+이중벽관+U형측구 단차해소(레벨조정)로 배수 기능 향상</p>  <p><변경 전></p> <p><변경 후></p>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1,2단지 전기(통신)공사

■ 회의참석자 : 정보통신공사 현장대리인 박성진 소장

항 목	건의 내용	비 고
타공종 설계반영 요청사항	<p>1. 승강기 설치공사에 승강기 CCTV용 영상변환기(A to D) 설계반영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행 : 정보통신공사와 승강기 설치공사의 CCTV 접속점에 영상변환기가 미반영 됨 - 개 선 : 승강로 내부배선 및 결선은 승강기 공사분으로 설계 시 승강기공사에 영상변환기 반영요청 - 사 유 : 통신공사분 배선방식(통신실~E/L PIT까지 배선:UTP케이블)과 승강기로 내부의 배선방식 (동축케이블:승강기공사분) 접속점에 영상변환기가 필요하나 설계시 반영이 되지 않아 마감공사 시 업체간 공사한계 등의 논쟁 발생 	
	<p>2. 동 지하 통신실내 환기시설(휼) 반영 필요 (기계, 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행 : 동 지하 통신실에 환기시설 미반영 됨 - 개 선 : 동 지하 통신실에 환기시설 반영 요청 - 사 유 : 동 지하 통신실 환기시설이 관련 규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통신장비 등으로 인한 열이 발생 하고 밀폐된 공간으로 장비의 유지보수 시 환기가 필요하므로 환기시설 필요 	
	<p>3. 경비실 마감공사 시 선반이나 책상 등 내부 인테리어 반영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행 : 경비실 마감공사 시 선반이나 책상 등 내부 인테리어가 미반영 되어 관리사무소 입주 시까지 경 비실기 등 장비를 바닥 등에 내려놓는 실정임 - 개 선 : 설계 시 경비실 내부에 선반이나 책상 등 내부 인테리어를 건축공사에 반영 - 사 유 : 경비실에는 각종 기기(경비실기 등)이 설치되나 대부분의 지구에서 선반이나 책상 등이 미설치 되어 관리사무소 입주 시까지 바닥 등에 내려놓는 실정임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 의견발표자 : 통신 현장대리인 백민길 소장 / 기계 현장대리인 정찬구 소장

항 목	건 의 내 용	비 고
공사 관련	<p>1. 전기 및 통신 중요시설이 설치되기 위해 특정부분의 선행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행 : 건축공정에 맞추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 선 : 특정부분에 대한 마감공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 구분이 필요함 - 요청사유 : 전기실을 조속히 마감지어 줌으로서 전력 공급이 빨리 이루어져 타 공정의 장비 시운전 및 테스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서 공정지연과 하자발생을 사전에 충분히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p>2. 발주자 및 실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결정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행 : 건축공정에 맞추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 선 : 실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능하면 변경시공하고 있음 - 요청사유 : 발주자 및 실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결정이 지연되어 연속적인 작업이 어렵고 후속 공정지연에 대한 최종 결정 지연에 따른 품질저하 및 하자발생 원인이 됨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 회의참석자 : 조경공사 현장대리인 신교호 소장

항 목	건 의 내 용	비 고
공정관리	<p>1. 마감공사시 공종간(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공정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행 : 마감공사시 공종간 공정협의를 원활하지 않아 후속공정이 선행공사하여 재공사하게 되어 하자발생의 요인이 됨. - 개 선 : 원도급사의 주도하에 하도급 공종간 공정관리 티타임 등 추진 - 사 유 : 마감공사시 공기에 촉박하여 협의나 회의를 추진하기 보다 매일 혹은 격일로 현장 간섭사항 등에 대한 스탠딩 회의를 통해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마감공사 수준향상 도모 	
내역반영	<p>1. 식재부적기 공사시 수목보호조치 비용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행 : 설계 시 공사기간 예측 불가 - 개 선 : 수목보호조치(수간보호, 물주머니 달기 등) 실시 비용 반영 - 요청사유 : 입주 및 공정 상 불가피한 부적기 식재시 수목하자최소화를 위한 조치 비용이 과다 발생 	